

아산시의회 공고 제2020-6호

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및 「아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4월 7일

아 산 시 의 회 의



1. 조례안 목록

조례안	발의의원	비고
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	조미경 의원	
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미영 의원	
아산시 시민 음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김희영 의원	
아산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김수영 의원	
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안정근 의원	
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홍성표 의원	
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	최재영 의원	
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최재영 의원	대표발의
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최재영 의원	대표발의

※ 조례안 : 따로붙임 참조

2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제·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기한 : 2020년 4월 12일(일)까지

나. 의견 제출방법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 등

3) 서면, 우편, 전자우편(pys9799@korea.kr), 팩스(041-540-2135)로 제출

4) 의견 제출할 곳 : (우)31512/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)

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(☎ 041-540-2905, 2628, 2705, 270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[붙임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의 견	비 고